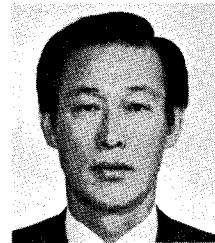


漁港開發 基本計劃 어떻게 세우나



金 炳 寅 〈水產廳施設局漁港課 工事 係長〉

漁港의 開發은 漁船의 安全收容과 漁獲物의 迅速한 揚陸處理를 위하여 必要한 防波堤 物揚場 船着場 護岸等의 施設을 設置하는 것으로 이러한 一聯의 構造物이 適切하게 施設되기 위하여는 基本資料를 正確히 調査 分析하여 그 地域與件에 符合되도록 基本方向을 設定하고 施設規模을 決定하여야 한다.

■ 基本資料 調査

基本計劃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基礎資料는 漁港의 立地的 與件과 自然條件으로 区分할 수 있으며 概略의 調査 内容은 다음과 같다.

立地的 與件調査

本 調査는 漁港의 生成過程과 背後地 發展의 餘地, 消費地와의 連繫性等이 漁港의 規模를 決定함에 있어 基準이 되는 要素이므로 이를 体系的으로 專門技術者가 調査하여야 한다.

첫째로, 漁港의 生成과 發展過程이 그 地域社會에 미쳐온 影響等에 関한 沿革을 調査하고

둘째로, 그 港의 勢力圈을 地理의 條件, 行政区域上 交通, 文化等의 社會, 經濟의 勢力圈을 根據로 直接 및 間接 勢力圈으로 区分한 社會, 經濟의 勢力圈과 對象港을 利用하는 漁船 및 漁民을 基準으로 操業漁場을 距離別(10km, 50km, 100km)로 区分한 水產業 勢力圈을 調査하고

세째로, 直接 勢力圈內의 人口 및 家口, 道路 및 交通, 通信施設, 水產業 関聯產業, 隣近港과의 関係等 人文社會 與件을 調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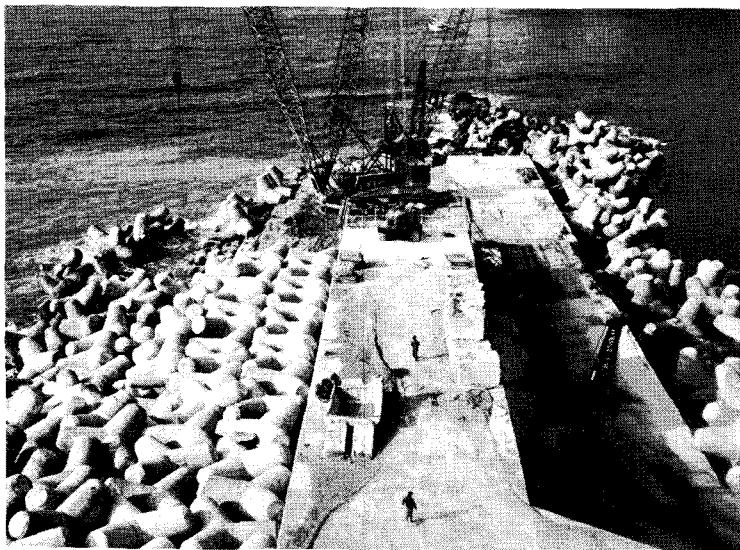
네째로, 背後의 主要 都市, 隣近港과의 陸上 및 海上距離와 對象港으로 流入하는 河川, 漂

砂의 變形等 地理의 港의 性格, 開發方向 設定에 利用할 수 있는 側面에서 地理的 與件을 調査하여야 한다.

自然條件 調査

自然的 條件調査는 適正規模의 漁港開發에 있어서 自然條件이 어떻게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判断하고 이에 對應하기 위한 施設 計劃 樹立에 繫要한 事項이므로 이는 海岸, 港灣 分野에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가 調査함이 바람직하다.

첫째, 既存 資料를 最大限 利用하고 現場 踏査를 通하여 港周辺의 地勢를 綿密히 把握하고 計劃 区域內의 海岸線 및 隣近地域의 現況等은 平板測量을 実施하여 一定한 縮尺(1/1,200以内)의 地形圖를 作成한 後 各所要施設의 平面計劃, 浚渫 및 埋立等 全般的인 計劃樹立을 위하여 港水域內의 水深을 音響測深 方法 또는 추측(錘測)으로 実施하여 地勢, 地形 水深을 調査한다.



■ 計劃의 基本 方向 設定

調査된 基本 資料를 基本 資料로
漁港의 性格(沿岸 漁業港 또는
緊急 待避港等)을 判斷하고 開
發 方向을 設定한다.

■ 規模의 決定

漁港의 規模는 收容해야 할 漁
船 隻數(盛漁期 또는 荒天時)
에 依하여 決定하되 將來 伸張
추세를 充分히 予測하여 決定한
다.

漁船 隻數 推定

過去 実績数(長期間 統計值)
를 根據로 하여 增加 추세를勘
察한 推定, 政府의 漁船 需給
計劃에 따른 分担(對象港)率에
依한 推定 等을 實施하여 比較
検討한다.

推定順序: 全國 및 沿近海 漁
船數 → 當該道의 漁船數 →
當該郡의 漁船數 → 直接 力
圈 内의 漁船數

施設 規模 決定

1) 規模 決定의 前提

漁港의 性格에 따라 收容 對
象 漁船數를 盛漁期와 荒天時
(待避) 境遇로 別하고 이때
에 規模 決定의 對象 船型 限界
도 前提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對象 船型의 限界는 1 Ton
級 以上으로 하고 있으나 漁港
의 與件에 左右될 수 있다.

둘째로, 隣近 測候所의 長期
間에 걸친 氣象觀測 資料를 基
礎로 對象地域의 바람 波向, 降
水, 氣溫等을 調查하여 施設物
配置, 作業日數 算出等에 利用
할 수 있도록 整理 分析한다.

세째, 各 施設物의 天端高 決
定에 基本 資料로 써 最小限 30
日 以上的 期間을 連續的으로
潮位를 觀測, 이를 調和 分析하
여 各種 潮位를 算出하고 外廓
施設 配置計劃에 있어서의 港
內 靜穩度 檢討, 斷面 決定 等
에 가장 重要한 波浪을 分析하
여 深海波와 浅海波로 区分 推
定한다. 이때 深海波는 主로 氣
象 資料(颱風, 바람 觀測 資料)
를 利用하여 有義波法(SMB法,
WISON法, IJIMA法)과 SPE
TRAL法 等으로 推定하게 되며
이러한 一聯의 方法으로 水
產廳에서 새로이 颱風의 영향이
가장 큰 東海 및 南海岸의 深海
波 推定 作業을 實施하고 있으

므로 1988年 下半期에는 그 結
果를 利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淺海波는 앞에서 말한 深海波를
基準하여 實際 構造物 設計時에
適用되는 計算波로서 深海波가
漁港으로 進入할 때 波長의 1/2
되는 水深의 海域으로부터 變
化가 始作되어 海底地形, 水深
및 海底 地質等의 形狀으로 屈
折變形, 浅水變形, 碎波 变形
을 일으키는 諸般 要素를 考慮
하여 波高(H1/3)를 推定하는
等 全般的인 海象을 調查하여야
한다.

其他 調査

立地의 條件 및 自然條件 調
査以外에 所要 規模의 漁港開
發에 既存 施設이 어떻게 利用
될 것인가를 判斷하고 水產 人
口 및 家口, 地方 및 外來漁船
利用現況, 漁獲高, 漁場 및 漁
期等 水產 全般에 関한 現況 等
도 詳細히 調査하여야 한다.

2) 漁船의 船型諸元

各船級別 諸元은 나라마다 多少 差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準으로 하고 있으며 補給 埠頭는 出漁 漁船에 對한 純油, 純

에 接岸한 漁船을 除外한 全集結 漁船의 75%로 하고 있다.

荒天時(颶風時)의 所要 埠頭는 待避 埠頭로서 別途의 区分 없이 모든 集結 漁船이 3從으로 接岸 待避하는 것을前提로 埠頭 所要 延長은 隻數×1.35B (B=船幅)×1/3로 計算하고 있다.

4) 泊地의 規模

泊地의 規模는 平常時와 荒天時의 所要 規模를 각각 計算하여 큰 値을 採択하는 것으로 平常時의 所要 泊地 規模는 用途別로 区分(揚陸用, 休息用, 補給用泊地)하여 算出하고 이를 合算한다. 揚陸用 泊地는 橫接岸을 基準하여 接岸幅 0.25L (L=船長), 航路幅 0.75L, 操船幅 1.5L을 合친 2.5L을 부두 연장으로 곱한 面積(埠頭 延長×2.5L)이며 補給用 泊地는 揚陸用 泊地의 計算 方法과 같이 한다.

荒天時의 所要 泊地 規模는 3從 接岸으로 하되 所要幅은 平常時에 比해 33% 程度의 餘裕를 둔다.

即 2.0L×3, 航路幅 1.0L, 操船幅 2.0L을 合한 9.0L을 所要 埠頭 延長으로 곱한 面積(所要 埠頭 延長×9.0L)이다.

船種	屯數	標準船型						버스의 첫수	
		길이	幅	船深	全長	全幅	滿載吃水	船座길이	船座水深
漁船	GT	M	M	M	M	M	M	M	M
	1	6.5	1.8	0.7	6.7	1.8	0.4		
	3	8.8	2.5	1.0	9.5	2.5	0.8		
	5	10.0	2.6	1.3	10.8	2.6	1.0		
	7	12.5	3.0	1.4	13.5	3.0	1.1		
	10	13.0	3.6	1.5	15.0	3.6	1.2		
	13	13.9	3.7	1.8	16.0	3.7	1.5		
	15	15.2	3.8	1.9	18.0	3.8	1.6		
	20	16.3	3.6	1.6	18.5	3.9	1.5	20	2.0
	30	18.5	4.1	1.8	21.5	4.35	1.6	25	2.5
	50	23.0	4.8	2.0	27.0	5.0	1.6	30	2.5
	60	25.0	5.0	2.3	29.7	5.2	2.0	35	2.5
	70	25.0	5.3	2.4	29.6	5.5	2.1	35	3.0
	100	28.3	7.4	2.75	32.0	5.6	2.5	40	3.0
	120	31.8	6.3	2.9	39.2	7.7	2.5	40	3.0
	150	30.0	6.2	3.2	38.5	7.5	2.8	40	4.0
	200	32.5	7.5	3.3	40.5	8.0	2.9	45	4.0
	300	41.3	8.7	3.6	49.7	8.2	3.2	55	4.0
	350	41.5	8.6	3.8	47.2	8.8	3.4	55	4.0
	420	49.0	8.6	4.0	55.1	8.8	3.4	65	4.0

適用하고 있는 基準은 다음 (表

1) 과 같다.

3) 接岸 施設의 規模

船型別로 漁船을 区分하여 平常時와 荒天時의 所要 規模를 각각 計算 큰 値을 採択하여야 한다.

平常時의 所要 接岸 施設은 그 用途別로 区分(揚陸埠頭, 補給埠頭, 休息埠頭)하여 規模를 算出한다. 揚陸 埠頭는 橫接岸하는 것으로 하여 回轉率(10~15回/日)을 求하고 埠頭 延長은 漁船 길이의 1·2倍를 基

水, 純冰等의 補給을 目的으로 하는 埠頭로서 收容 漁船 數에 따라 다음 (表 2) 과 같이 計劃한다.

補給 埠頭 計劃 基準

入港隻數	所要船座數	備考
200隻 以下	1船座	純油, 純水,
200~500隻	2船座	純水各各
500隻 以上	3船座	所要

그리고 休息埠頭는 揚陸 或은 出漁 準備 前後의 休息 또는 待機를 위해 必要로 하는 埠頭로서 接岸 方法은 3從 接岸으로 하며 對象 隻數는 揚陸 埠頭

平面配置計劃

平面配置計劃의 立案

이미 設定된 開發 計劃의 基

傾斜堤의 天端高는 直立堤의 消波工 設置
 경우에 準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基準하여도
 無妨할 것으로 생각되나 各 渔港이 지니고 있
 는 諸般 與件을 考慮하여 經驗과 知識이 豊
 富한 專門 技術者の 判断에 따라 決定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本方向에 따라 港의 自然 條件
 을 考慮하여 靜穩 水域 (所要泊
 地) 과 所要 接岸 施設을 確保
 하고 經濟性, 施工性 및 利用面
 (漁船의 出入時 操船 難易度,
 將來 拡張時의 問題点) 等을 專
 門 技術者가 綜合的으로 考慮 可
 能한限 3個案 以上을 立案하
 되, 特히 港의 開口幅과 方向
 에 對하여는 慎重히 檢討하여
 操船에 영향이 없도록 格別 留
 意하여야 한다.

平面配置案 決定

立案된 3個 以上을 施設 配
 置規模, 港內 靜穩度, 施設의 利
 用便宜, 概略工事費等을 比較
 하여 長·短點을 檢討하여 最適
 案을 採択 決定한다.

■施設 計劃

渔港의 平面 配置 計劃에서
 決定된 各 施設物의 外力에 對

한 安全 斷面과 그에 隨伴되는
附帶施設 等을 計劃한다.

外廓 施設

渔港에 進入하는 波浪을 遮蔽
 시켜 港內 靜穩度를 維持 시킴
 으로써 利用 渔船의 定全碇泊
 이 可能하도록 防波堤 施設을
 하는 것으로 渔港開發에 있어서
 가장 比重이 큰 構造物이다.

이미 自然的 條件에서 얻어진
 基本資料를 基準으로 天端高,
 被覆材 重量等을 算定하고 이에
 따르는 施工性, 經濟性等이 考
 慮된 3個案 以上的 斷面型式을
 比較 檢討하여 位置別로 最適
 斷面을 決定한다.

1) 天端高決定

渔港 構造物에 對한 別途의
 基準이 없어 港灣 設計 基準에
 依하여 計劃하고 있으나 渔港은
 港灣보다 規模가 적고 利用上의
 特殊性을 지니고 있어 그 基準

을 港灣과는 多少 다르게 適用
 하고 있는 日本의 “漁港 構造物
 設計 基準”에 依하면 防波堤 天
 端高는 港內 利用上 要求되는
 機能等을勘案하여 決定하되 消
 波工을 設置하지 아니하는 直
 立堤의 天端高는 原則적으로 舱
 望 平均 滿潮面에 一定 높이를
 加算하는 것을 標準으로 하며

$$R_L = 1.0H \dots H \geq 3.5m$$

$$0.8H \dots H < 3.5m$$

H : 堤体前面의 有義波高

RL : 舱望平均滿潮面 (+偏差)
 上의 天端高

越波를 阻止할 경우는 原則적으로
 堤体前面에 消波工을 設置하는
 것으로 이때 堤体直立
 部와 消波工의 天端高는 舱望
 平均 滿潮面(+偏差)의 높이에
 一定 높이를 加算하는 것을 標
 準으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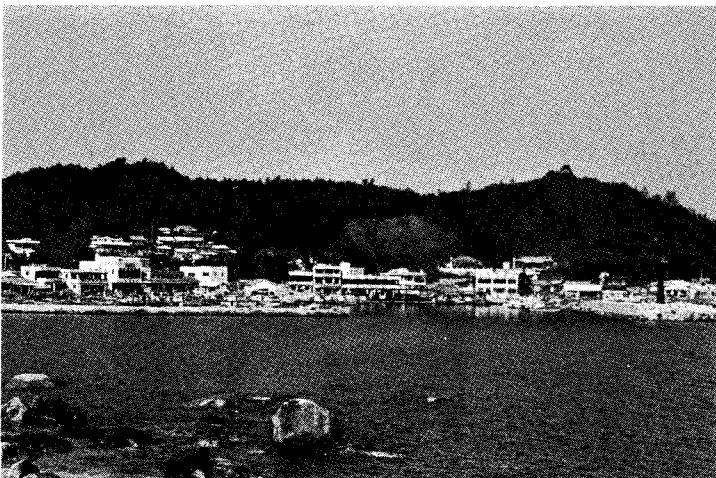
$$R_L = 0.9H \dots H \geq 3.5m$$

$$0.8H \dots H < 3.5m$$

傾斜堤의 天端高는 直立堤의
 消波工 設置경우에 準하도록 되
 어 있어, 이를 基準하여도 無
 妨할 것으로 생각되나 各 渔港
 이 지니고 있는 諸般 與件을 考
 慮하여 經驗과 知識이 豊富한
 專門 技術者の 判断에 따라 決
 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天端幅 決定

捲石堤나 異型 블록 被覆傾斜
 堤의 天端幅은 堤体 斷面 安全
 計算에 依據 決定하되 使用 피
 복재 3個 以上을 나란히 据置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❾



接岸施設

接岸施設이란漁船을橫接岸,縱接岸하여漁獲物의揚陸,漁業生産用資材의積載,積荷等의作業을 위하여築造하는構造物의岸壁,物揚場棧橋等의施設로서基礎地質과利用漁船의船型에符合되는2個以上의斷面型式을比較検討하여位置別로最適案을採択決定한다.

1) 天端高

一般的으로潮位 또는利用漁船의船型利用方法等을調查하여決定한다.漁港은港灣에比하여그荷役方法이나利用用途가다르므로漁港의接岸施設에對한別途의基準을定하고 있는日本의例를 보면將來利用漁船의型式, 치수등을明確히定하기가 어려운경우物揚場의天端高는朔望平均滿潮面에 다음(表-3)의欲을加算한것을参考로하여定하고 있다. 또한天端高는港內의頻度가많은波浪,異常潮位等에따라物揚場위에海水가侵入하는경우도있으므로充分

히留意하여決定하도록되어있어이를適用하여도無妨할것으로생각되나專門技術者の判断에따라漁港의與件에符合되도록決定함이옳을것으로본다.

潮位差 (H.W.L-L.W.L)	対象漁船(G.T.)			
	0~20t	20~150t	150~500t	500t以上
m m	m	m	m	m
0~1.0	0.7	1.0	1.3	1.5
1.0~1.5	0.7	1.0	1.2	1.4
1.5~2.0	0.6	0.9	1.1	1.3
2.0~2.4	0.6	0.8	1.0	1.2
2.4~2.8	0.5	0.7	0.9	1.1
2.8~3.0	0.4	0.6	0.8	1.0
3.0~3.2	0.3	0.5	0.7	0.9
3.2~3.4	0.2	0.4	0.6	0.8
3.4~3.6	0.2	0.3	0.5	0.7
3.6以上	0.2	0.2	0.4	0.6
加数	m	m	m	m
	0	0~0.5	0.5~1.0	1.0

揚陸 및出漁準備用; H.W.L + (表-3의欲)
休息用; H.W.L + (表-3의欲) + (表-3의加数)

2) 에프론(APRON)

에프론은漁獲物을揚陸하고運搬하거나船需品補給運搬手段의通行,上屋施設을위하여그幅을10~15m로함이바롭직하나埠頭別(揚陸,出漁,休息埠頭)로用途가다르므로專門技術者の判断에따라決定하여야한다.

附帶施設

漁港의基本施設이完成되고나면利用漁船의便宜提供을위하여給油,給水,給冰等補給施設과委販場,共同倉庫等附帶施設計劃을樹立하여順次的으로施行될수있도록誘導하여나가야한다.

概略工事費 및 投資計劃

施設計劃의斷面型式에對한m당施工單價를算定하고,그單價로平面配置計劃案의概略工事費를案별로算出적정한案을採択한후施工순서등을고려投資計劃을樹立하여야한다.

綜合評價 및 效果分析

經濟性檢討

評價方法에는費用便益比(B/C),內部收益率(IRR),純便益率(NPV)等이一般的으로使用되고있으며費用便益比(B/C)가主로檢討되어지고있다. 그方法은直·間接便益의總便益에對한施設費等費用의比로서 나타낸다.

綜合評價

漁港開發에따른經濟的妥當性,水產業,地域社會發展,隣近島嶼等과의관계를綜合적으로評價한다.◆